

평정단위별 평가자·확인자(제21조 관련)

평 가 자	확 인 자	비 고
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사용부서의 장 및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원장이 정하는 자	원장	